상해·폭행치상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가혹행위·추행·폭행

[제6사단 보통군사법원 2007. 10. 16. 2007고10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찰 관】 중위 도영오

【변 호 인】변호사 조한주

【주문】

1

- 1.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처한다.
- 2. 다만,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- 3. 피고인 2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.

【이유】

]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]

【이유】

1